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32

발의연월일: 2020. 11. 10.

발 의 자:소병훈·고영인·정청래

용혜인 · 조오섭 · 김승남

김용민 · 안규백 · 홍성국

양정숙・노웅래・맹성규

최종윤 · 강득구 · 정일영

이재정 · 강은미 · 이용호

임종성 · 한병도 · 권인숙

서동용 · 남인순 · 오영환

주철현 의원(2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처리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당 및 실비 는 소액으로 책정되어 있음.

또한,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선거일에도 투표참여 독려행위, 선거사무소 업무 정리 등을 실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간에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이루 어지거나 마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왔음.

공직선거는 정치와 국민이 만나는 국민의 축제로 볼 수 있고, 이를 매개하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수당을 현실화 하여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 나. 선거사무장등의 수당과 실비는 선거일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제135조제3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수당과 실비는 선거일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 중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3項의 規定에"를 "제135조제4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생 략)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
류와 금액은 中央選舉管理委員	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
會가 정한다.	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
	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
	<u> 어야 한다.</u>
<u> <신 설></u>	③ 제1항의 수당과 실비는 선
	거일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공
	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에 100
	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第.	<u> 135</u>	條(選	學	事	务员	割仔	令者	에
1	대형	한	手'	当ュ	<u> </u>	實	費剤	補信	賞)	第3	3項
9	의	規	定	게_	위	반	하ㅇ	뉙	手	當	·實
Ī	費	기	타	自	願	奉作	生어]	대	한	報
1	賞	등	. [경 돌	<u> </u>	하	를	F	불분	급히	-고
ì	選星	暑追	運動	과		관	견ㅎ	} 0	1	金	品
,	7] E	1	0]	익의	의	저	공	Ţ	王늯	=	ユ
7	제급	공으]	의	사	를	3	王ノ	ोठं	l 기	나
,	コ	제	공을	<u> </u>	약=	속	한 🧦	占			
5.	~	7.	(\z	H	략	:)					
(2)	\sim	(8	0 (갦	ī	斗)					

4. <u>제135조제4항을</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